

【붙임 2】

입찰제안서 평가요소 및 세부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 30점)

가. 이행(납품) 실적(배점한도 12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평가기준	평점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최근 5년 이내 철도(전용철도 제외) 평가대상 네트워크 장비 를 직접 납품 및 설치한 실적(금액) - 평가기준 : 이행실적/추정가격	12	A. 100% 이상	12
			B. 80% 이상 ~ 100% 미만	10
			C. 60% 이상 ~ 80% 미만	8
			D. 60% 미만	6

주1. 평가대상 네트워크 장비

- 1) 동등이상 물품 : Carrier Ethernet(IP-MPLS, MPLS-TP, PBB)
2. 이행(납품) 실적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민자철도에 평가대상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한 최근 5년 이내 실적 누계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이행(납품) 실적 평가를 위하여 상기 평가대상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설비임을 증명하는 입찰자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실적 평가대상 네트워크 장비의 명칭이 상기와 다른 경우, 해당 장치의 역할을 하는 설비임이 확인 가능하도록 실적증명서에 보충설명을 기재 하여야 한다.
5.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므로 실적 인정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 구매자의 해석에 따르며, 입증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나 첨부자료만으로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기술인력(배점한도 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평가기준	평점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6	A. 특급기술자 보유	
			① 3인 이상	3.0
			② 3인 미만 ~ 1인 이상	2.5
			B. 고급기술자 보유	
			① 3인 이상	2.0
			② 3인 미만 ~ 1인 이상	1.5
			C. 중급기술자 보유	
			① 3인 이상	1.0
			② 3인 미만 ~ 1인 이상	0.5

- 주1. 기술인력 구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1(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기준으로 실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2.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 1)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3. 기술인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심사항목의 A, B, C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2)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해당되는 A, B, C 등급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6점)를 초과할 수 없다.
4.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5. 해당증빙 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

다. 경영상태(배점 한도 9점)

신용평가등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9
AA ⁺ , AA ⁰ , AA ⁻	A1	①의 AA ⁺ , AA ⁰ , AA ⁻ 에 준하는 등급	
A ⁺	A2 ⁺	①의 A ⁺ 에 준하는 등급	
A ⁰	A2 ⁰	①의 A ⁰ 에 준하는 등급	
A ⁻	A2 ⁻	①의 A ⁻ 에 준하는 등급	
BBB ⁺	A3 ⁺	①의 BBB ⁺ 에 준하는 등급	8.7
BBB ⁰	A3 ⁰	①의 BBB ⁰ 에 준하는 등급	8.4
BBB ⁻	A3 ⁻	①의 BBB ⁻ 에 준하는 등급	8.1
BB ⁺ , BB ⁰	B ⁺	①의 BB ⁺ , BB ⁰ 에 준하는 등급	7.8
BB ⁻	B ⁰	①의 BB ⁻ 에 준하는 등급	7.5
B ⁺ , B ⁰ , B ⁻	B ⁻	①의 B ⁺ , B ⁰ , B ⁻ 에 준하는 등급	7.0
CCC ⁺ 이하	C 이하	①의 CCC ⁺ 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없음	0.0

- 주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없음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 (배점한도 3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점	비고
계약 질서 준수정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5점	최근 3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	1.5	조달청 홈페이지 부정당제재정보 조회
		최근 3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0.5	
	1.5점	최근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1.5	온라인사건처리 시스템 홈페이지 조회
		최근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경우	-0.5	

※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조치 건에 대한 가처분신청(최종 판결 전) 등에 대해서는 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2.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배점한도 70점)

평가항목	배점 한도	세부평가항목	세부 배점	평가요소
사업계획 및 수행방안	50	사업이해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량사업 핵심목표 설정의 적정성 ▫ 사업범위와 내용 이해도 ▫ 사업추진 방향의 적정성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자 구성, 조직 간 역할 및 책임 부여, 협력방안 등의 적정성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의 적정성 ▫ 수행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한 설명의 적정성 ▫ 사업성과(기대효과) 제시 및 분석의 적정성
		시스템 구축 방안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구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유지관리 및 비용을 고려한 망구성의 적정성 ▫ 정보통신망 회선 서비스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신호 설비 회선 수용방안 - 열차무선 등 E1급 회선 수용 방안 - MUX 회선 수용 방안 - 이더넷 회선 수용방안 - LTE-R, CCTV(IP카메라) 구축 시 회선 수용방안 - 차세대 스마트 스테이션 플랫폼 및 IoT 네트워크 회선 제공 방안 ▫ 이중화 및 장애관리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이원화 구성방안 - 장치별 주요 유니트 이중화 구성 방안 - 가입자 회선 이중화 구성 방안
		기능 및 성능 요구 사항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적정성 ▫ 차량기지, 관리역, 일반역사 장치 세부사양 구성의 적정성 ▫ 확장성 및 장기간 사용을 감안한 트래픽 용량 산정, 유니트 실장수량, 여유 슬롯 제공 등의 적정성 ▫ NMS 구성방안의 적정성 ▫ 전원공급장치 구성의 적정성 ▫ 시험장치 구성의 적정성 ▫ 계측기, 클럭공급장치 및 기타 부대품 구성의 적정성 ▫ 시스템 신뢰성(MTBF 제시) 적정성
		설치 및 절체 방안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설치 방안의 적정성 ▫ 지진대책, 접지, 전원구성의 적정성 ▫ 광케이블 및 케이블 구성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 절체 방안의 적정성 ▫ 현장정리 및 철거 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배점 한도	세부평가항목	세부 배점	평가요소
		시험 및 검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검사 방법의 적정성 ▫ 설치검사(시험) 계획의 적정성 ▫ 종합시험 계획의 적정성 ▫ 시운전 검사 계획의 적정성 ▫ 기능 및 성능에 대한 검증방법의 적정성 ▫ 공인기관 인증 항목 및 시험의 적정성
		보안대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성(보안적합성) 검증 방안의 적정성 ▫ 제안사별 시스템 보안 대책의 적정성 ▫ 보안정책 및 보안이슈 적정성 ▫ 각 회선별 보안 방안의 적정성
		대안제시 및 추가제안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요청 사항과 동등 이상의 대안 제시 항목에 대한 적정성 ▫ 추가제안 사항의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20	공정관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 계획의 적정성 ▫ 장비 수급 기간의 적정성 ▫ 공정관리 방안의 적정성
		품질,안전,환경관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안전,환경관리 조직 구성의 적정성 ▫ 품질,안전,환경관리 활동의 적정성 ▫ 품질,안전 확보 및 검증 방안의 적정성
		교육훈련 및 기술자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지원방안의 적정성 - 강사 구성, 교육횟수, 교육내용, 교육기반 등 ▫ 기술자료 제공방안의 적정성 - 자료 목록, 내용, 도면, 소프트웨어 등 제공범위
		기술지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 인력 및 체계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 이후 기술지원 조직, 인력 및 방안의 적정성
		유지관리 정책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김해경전철(주) 자체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적정성 ▫ 예비품 제공 수량의 적정성 ▫ 부품 및 장비 생산, 수급, 단종 정책의 적정성 ▫ 유지보수 지원 방안의 적정성 ▫ 장비 내용연수에 따른 운용기간별 유지보수 대책 제시의 적정성
		하자보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보수 관리체계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치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사후관리의 적정성
합 계	70		70	